

#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2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12월 19일  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문내용 중 ‘실태조사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지원계획에 포함하고, ‘실태조사단’ 관련 조항은 삭제함

## 2. 주요골자

- 안 제4조제1항 중  
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”을  
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·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”으로 하며,  
안 제5조를 삭제하고,  
안 제6조부터 제10조를 제5조부터 제9조로 변경함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”을  
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·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”으로 하고,

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 
제5조부터 제9조로 수정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</u>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국외소재문화재 보호·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</u>을 수립·시행한다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실태조사단)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(이하 “실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조사관을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과 관계전문가, 언론인 각계 인사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역사사료,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·분석</li> <li>2.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판정</li> <li>3.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</li> <li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</li> </ol> <p>④ 시장은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조사관의 임기·복무·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제6조(자료제공) (생략)	제5조(자료제공) (제정안과 같음)
제7조(환수 후 관리) (생략)	제6조(환수 후 관리) (제정안과 같음)
제8조(재정지원) (생략)	제7조(재정지원) (제정안과 같음)
제9조(협조체계 구축) (생략)	제8조(협조체계 구축) (제정안과 같음)
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9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국외소재문화재”란 서울특별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2천년 고도의 역사를 고려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·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자료제공)**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**제6조(환수 후 관리)**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·관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재정지원)**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
2.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·홍보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협조체계 구축)**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, 국외소재문화재단, 한국국제교류재단, 재외동포재단,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·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